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성평등가족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유해 매체물 판매 등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(안 제50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